

인천지방법원 2021. 6. 16 선고 2020가단2814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임성원, 김수경

변 론 종 결 2021. 5. 26.

판 결 선 고 2021. 6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6. 1. 1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,289,5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1,289,546원과

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1) D은 2012. 3. 1. E 주식회사로부터 6,000,000원을 대출받았고, E 주식회사는 2018. 6. 18. F 주식회사에, F 주식회사는 2019. 12. 23.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.

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40024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. 11. 3. ‘D은 원고에게 7,185,559원과 그 중 4,003,270원에 대하여 2020. 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2) D은 2013. 1. 14. G 주식회사로부터 7,000,000원을 대출받았고, G 주식회사는 2015. 9. 16. 주식회사 H에, 주식회사 H는 2017. 6. 9.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.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1923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. 1. 23. ‘D은 원고에게 8,390,869원과 그 중 5,748,161원에 대하여 2018. 7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

1) 피고는 망 I의 배우자로, 그 사이에 자녀로 J, D, K, L이 있다.

2) 피고와 망 I은 2002. 6. 5.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수하여 2002. 7. 5. 각 1/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망 I은 2013. 12. 22. 사망하였고, 상속인들인 피고와 J, D, K, L은 2016. 1. 18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I 소유의 1/2 지분에 관하여 2013. 12. 2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7 내지 9, 11, 12 내지 14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/11 지분(= 망 I이 소유하던 1/2 지분 × D의 상속분 2/11)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바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1,289,5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위 피보전채권액 21,289,546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.

3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I의 사망일인 2013. 12. 22. 이루어졌는바,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그러나 망 I의 사망 당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2013. 12. 2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것은 구 '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(등기예규 제438호)'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을 제8,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2016. 1. 1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(갑 제14호증,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일자는 등기업무 담당직원이 등기신청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의 기재를 뒤집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3. 12. 22.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. 1. 18.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. 12.

17.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본안에 대한 판단

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.

가. 관련법리

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,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.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. 따라서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3조의2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,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,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이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6다33357 판결,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취지 등 참조).

나. 판단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M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,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N(감정인 O)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, 피고와 망 I은 2009. 8. 25. P에게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22,000,000원에 임대한 사실, P는 피고와 망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09. 9. 9.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, 피고와 망 I은 2013. 4. 18. Q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호실을

임대차보증금 25,000,000원에 임대한 사실, Q은 피고와 망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3. 5. 22.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. 1. 27.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. 1. 18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32,904,4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와 망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P와 Q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그 각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, 공유자인 피고와 망 I 또는 D을 포함한 망 I의 상속인들의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므로, D이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1/11 지분(= 망 I이 소유하던 1/2 지분 × D의 상속분 2/11) 중 위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 상당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. 그런데 P와 Q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합계액 47,000,000원(= 22,000,000원 + 25,000,000원)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/11 지분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가액 21,173,130원(= 232,904,440원 × 1/11, 원 미만은 버림)을 초과하므로,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1/11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인혜

(별지)

부동산 목록

1. 인천 부평구 R 대 131㎡
2. 인천 부평구 R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
1층 69.87㎡(2가구), 2층 68.07㎡(1가구), 지하 72.70㎡(2가구)
[도로명주소] 인천 부평구 S